

자본시장 활성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2025. 8.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 순서

I. 검토 배경 .....	1
II. 개선방향 .....	2
III. 주요 추진과제 .....	4
1.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제재하여 시장질서 확립 ..	4
1)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감법 과징금 상향 .....	4
2)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 .....	6
3) 회계부정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	7
4)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과징금 실효성 강화 .....	9
2. 회계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 개선 ...	11
1) 내부감사, 외부감사,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 근절 ...	11
2) 다수의 과실 오류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신설 ..	13
3)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따른 회사 제재 감경 ...	14
4) 회계부정 신속 조사·정정시 회사 제재 감면 .....	15
IV. 향후 계획 .....	16

# I. 검토 배경

-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
  -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연계

※ (7.3일,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VIP말씀)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천포인트를 넘어갈 것 (중략)

-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상법개정 같은 제도개선, 그리고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는 것

- 금융위(증권위)는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 「회계개혁」(외부감사법 전면개정, '17.10월)을 계기로 과징금을 도입하고 엄정 제재
  - '18년 이후 '25.상반기까지 총 490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하여 회사 및 회계부정 가담자에 대해 약 1,000억원 과징금 부과

제재 건수(건)				과징금(억원)		
과실	중과실	고의	계	회사	회사관계자	계
383	39	68	490	856	132	988

- 고의분식 등 중대 위반사건 96건은 검찰 고발 또는 이첩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계부정 감소 추세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고의 분식은 오히려 증가세

구 분	'19	'20	'21	'22	'23	'24
회계부정 제재건수	23	65	85	106	97	84
고의 분식회계	2	9	9	8	13	21
내부자 등 회계부정 신고	-	-	125	130	141	179

⇒ 회계부정 제재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과징금 등 제재기준·방식을 한층 강화하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마련

◆ 우리나라가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 중심 기준'으로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존재 → 경제형벌 강화시 기업활동 위축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한 분식유인 차단이 효과적

## II. 개선방향

### 기본 방향

-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을 대폭 강화
- ◇ 내부감사(감사위원회·감사) - 외부감사인 - 회계감리(당국)의 3중 회계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재방식 개선
  - ※ 연구용역과 함께, 수년간 증선위·감리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개선

### 추진 과제

회계부정 엄정제재		회계감시 강화 유도	
<b>회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의 회계분식 과징금 규모 확대</li> <li>•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증액 부과</li> </ul>	<b>회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부감사, 당국 심사·감리 방해시 엄정 문책</li> <li>• 회계관리 부실 회사에 내부회계 외부감사 및 감사인 지정 조치 신설</li> </ul>
<b>개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부정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li> <li>• 고의 분식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한도 확대</li> </ul>	<b>내부감시기구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부정 예방노력에 비례한 제재감경 적용</li> <li>• 교체 경영진·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신속조사·정정시 제재감면(최대 면제)</li> </ul>

**시장신뢰 회복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 개별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리주기가 약 20년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억제할 강력한 금전제재 부과

- ①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 및 제재조치 양정기준 강화
  - ②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피해가 큰 '장기간' 회계부정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
  - ③ 분식회계를 '사실상 주도'한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사각지대 해소
- \* 외형상 분식회계의 책임자가 아니나, 회장·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회사를 실제 소유하는 자로서 사실상 회계부정을 주도적으로 지시·관여한 자
- ④ 회계부정 관여자(개인)에 대해 책임·죄질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인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회계부정 감시를 위한 3대축인 내부감사(감사위원회 등), 외부감사인, 회계감리(회계당국)가 체계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재 개선

- ① 자료 위·변조 등 내부 감사, 외부 감사,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고의 분식회계로 엄정 조치
  - ② 회사 내부회계관리체계가 부실한 경우, 재무제표 산출·공시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유도하는 실효적 제재조치 신설
  - ③ 내부감사기구 제재수준이 회계감시 노력수준에 비례하도록 제재 양정기준 정교화
- 감사위원회 등이 사전에 회사의 회계부정을 인지·조사·수정한 경우, 감사위원(감사)뿐 아니라 회사에도 제재 인센티브 부여
- ④ 회계부정이 조기에 조사·적발·정정될 수 있도록 경영진이나 대주주 교체시 회계부정 조사에 따른 제재 인센티브 강화

### Ⅲ. 주요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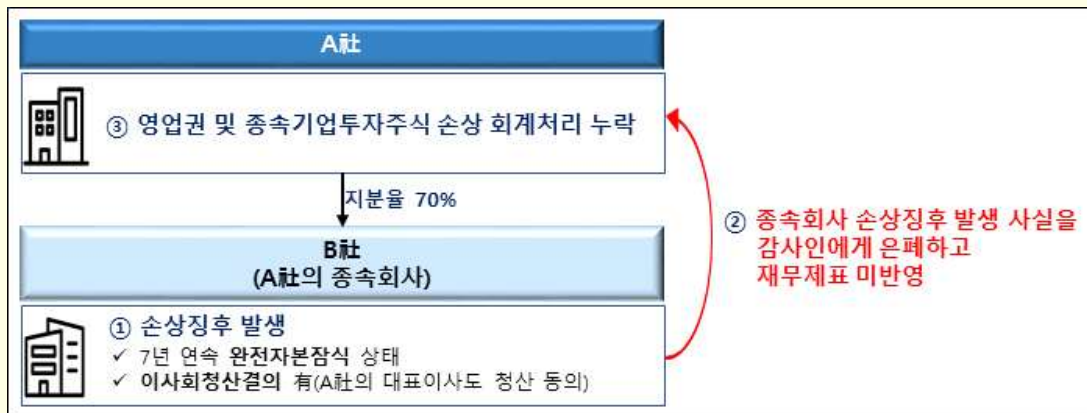
#### Ⅰ |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 확립

#### 1 |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감법 과징금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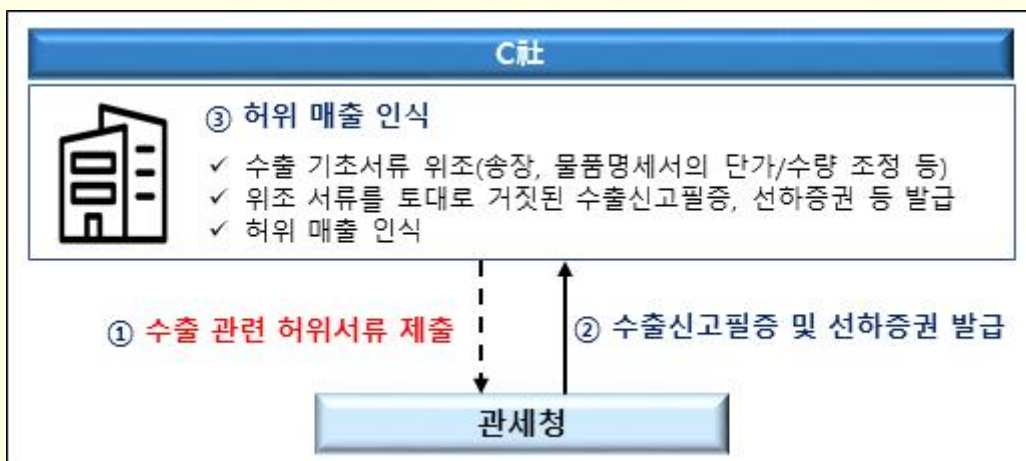
- (현황 및 문제점) 재무제표를 왜곡하여 투자자 등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
  - 관리종목 지정, 투자·대출 회수(EOD 발동 등)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장부·전표 위변조, 부채 고의누락 등 의도적 분식회계 지속

[ 과거 조치사례 : ①사실은폐, ②위조서류 제출 등을 통한 회계부정 ]

- ① A社코스닥는 종속회사의 청산결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하고 관련 손상차손을 미반영하여 자산 및 자본 과대계상



- ◆ C社코넥스는 수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관세청에 제출하고 수출신고필증 등을 발급 받았으며, 위·변조 서류를 토대로 매출을 허위 계상



□ (개선방안) 의도적 회계정보 은폐·조작, 자료 위변조 등을 통한 재무제표 공시 위반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

○ 제재 양정시 중요도를 '中'에서 '上'으로 상향 적용(횡령·배임,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수준)

\*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피해를 야기하는 고의적 회계분식은 그 자체로 중대범죄이며 자본시장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점을 반영

⇒ 최근 3년간 고의적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과징금 약 34% 증액 효과 (최소 21%~ 최대 115%)

< 과징금 부과액 변화 예시 >

구분	기준금액 (위반금액) (A)	중요도점수					부과 기준율 (B)	부과액 (A x B)
		위반내용 (0.4)	위반규모 (0.2)	회사유형 (0.2)	시장영향 (0.2)	점수		
현행	300억원	2	2	3	3	2.4	15%	45억원
개선		3	2	3	3	2.8	20%	60억원 (33% ↑)

※ 외감법상 과징금 산출방식

과징금 = 위반금액<sup>1)</sup> × 부과기준율<sup>2)3)</sup>

- 1)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
- 2) **위반행위 내용**(40%), 위반규모(20%), 상장여부(20%), 시장영향(20%)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 점수(1~3점) 산정
- 3) 중요도 점수에 따라 최소 2%~20% 범위에서 부과기준율을 결정

< 회사 대상 부과기준율 >

중요도점수	2.6 이상	2.4 이상 ~2.6 미만	2.2 이상 ~2.4 미만	2.0 이상 ~2.2 미만	1.8 이상 ~2.0 미만	1.6 이상 ~1.8 미만	1.4 이상 ~1.6 미만	1.4 미만
부과기준율	20%	15%	12.5%	10%	7.5%	5%	3.5%	2%

👉 (필요조치) 외감규정 [별표8(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필요

2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

- (현황 및 문제점) 과징금 도입초기에 과도한 과징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토록 기준 마련
    - 그러나, 회계부정을 즉각 정정할 유인이 없고 제재실효성이 낮아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고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 \* 고의·중과실 회계위반 중 약 50%는 2개년 이상 지속(3개년 이상도 15% 차지)
  - (개선방안) 장기간 중대 회계기준 위반시(고의·중과실) 과징금 가중
    - (고의 회계위반) 위반기간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 30% 가중 (예, 2년: 30%, 3년: 60%, 4년: 90% ...)
    - (중과실 회계위반) 위반기간 2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 20% 가중 (예, 3년: 20%, 4년: 40%, 5년: 60% ...)
- ⇒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사건(고의·중과실) 시뮬레이션 결과, 과징금 20~200%(평균 31%) 증액 효과

[ 과거 조치사례에 同 개선방안 적용시 효과 ]

◆ 상장회사코스닥 A社は 4년간('18~'21) 회계위반(고의)이 지속되어 투자자 피해가 확대됐으나, 과징금은 '18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

< 과징금 부과금액 변동 >

구분	연도별 과징금 산출금액				[현행] 부과액	[개정] 부과액
	'18년	'19년	'20년	'21년		
과징금	60억	53억	46억	38억	60억	114억
					가장 큰 '18년 기준으로 부과	'18년 기준 과징금에 90%(30%*3년) 가중

◆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제출대상 B社は 3년간('20~'22) 회계위반(중과실)이 지속되어, 잘못된 정보를 공시하였으나, 과징금은 '22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

< 과징금 부과금액 변동 >

구분	연도별 과징금 산출금액			[현행] 부과액	[개정] 부과액
	'20년	'21년	'22년		
과징금	7억	19억	35억	35억	42억원
				가장 큰 '22년 기준으로 부과	'22년 기준 과징금에 20%(20%*1년) 가중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시행령, 외감규정 [별표7(조치 등의 기준)] 및 [별표8(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현행 및 문제점) 분식회계 주도·가담자 등은 '회사로부터 보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만 과징금 부과 가능

\*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아야할 보수, 배당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

○ 업무집행지시자가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받은 보수가 없거나,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며 계열사로부터만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없어서 사각지대 발생

\*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편취하고서도 법적 책임 회피 가능

[ 과거 조치사례 : ①사적유용, ②계열사 임직원을 통한 분식회계 ]

◆ A社<sup>코스닥</sup>와 B社의 사실상 실소유주인 甲\*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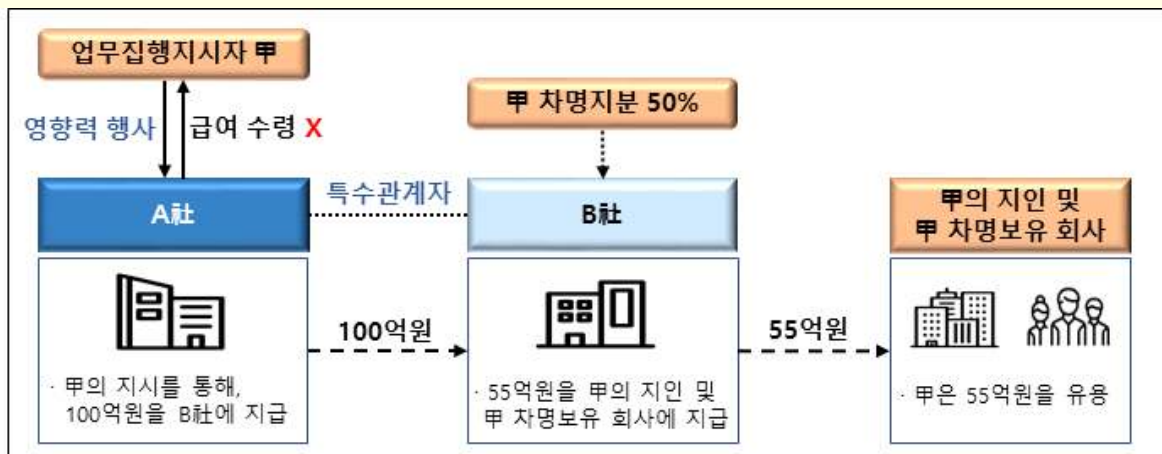
\* A社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무집행지시자

○ A社<sup>코스닥</sup>로 하여금 자신이 공동지배하는 B社에 보증금·선금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그 중에 55억원을 지인 및 차명보유 회사를 통해 사적으로 유용

○ 甲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특수관계자 주석에서 관련 거래를 공시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A社<sup>코스닥</sup>의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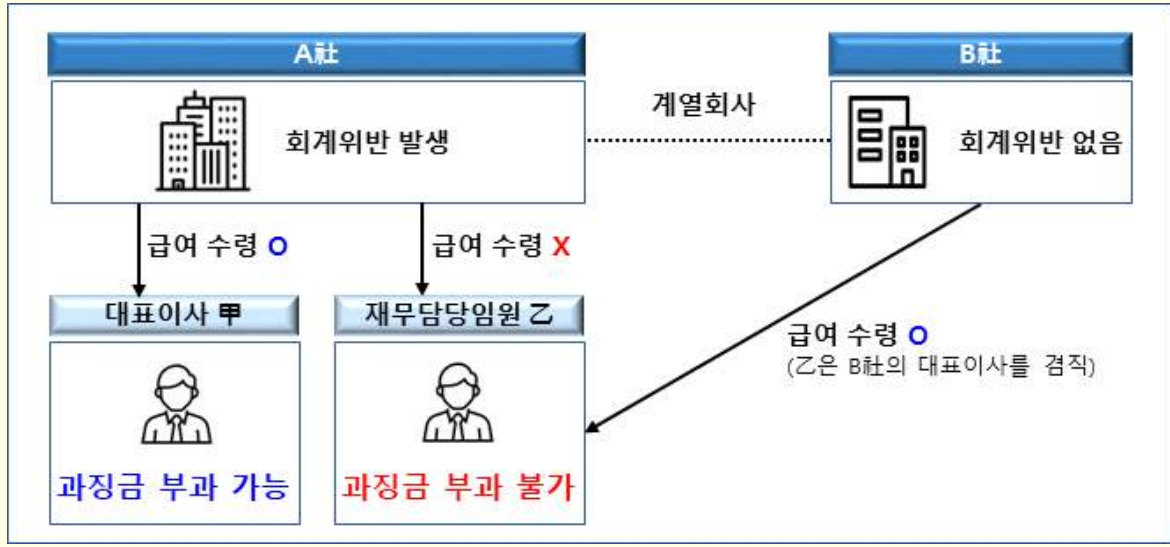
○ 그러나, 甲은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수 등이 없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함

※ 한편, 甲의 지시를 받고 분식회계를 수행한 대표이사만 3.7억원 과징금 부과



[ 과거 조치사례 ]

- ◆ A社<sup>코넥스</sup>의 재무담당임원 乙은 회사의 회계부정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음
- ◆ 그러나, 乙은 A社<sup>코넥스</sup>의 계열사인 B社の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B社에서만 급여를 받고, A社<sup>코넥스</sup>에서는 별도급여를 전혀 받지 않아서 과징금 미부과



□ (개선방안) 회계위반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보완·개선

①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보수가 없어도 사적 유용금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 금전적 보상(보수, 배당 등), 횡령·배임액(법원으로부터 인정된 금액으로 한정) 등

② 계열회사(회계상 동일 연결실체 내 회사\*)로부터 보수, 배당 등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

\* 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

③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과징금 최저금액\* 신설·부과

\* '24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7,170만원) 및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자 평균연봉(2.62억원) 등을 고려하여 최저기준금액을 1억원 수준으로 검토

※ (참고) 자본시장법상 최저 기준금액 규정

-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 부당이득 산정 곤란시 3~5천만원 최저기준금액 도입·적용중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및 외감규정 [별표8] 개정 필요

4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과징금 실효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회계부정 가담자 개인과징금 부과시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감경기준 및 부과한도\* 운영중

\* 개인에 대해서는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 이내에서 부과 가능(외감법)

○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책임의 크기와 제재수준간 비례성과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제기

① (감경기준) 재무제표 정정공시 등 現 경영진의 사후 수습노력에 대한 제재감경이 회계부정에 직접책임이 있는 前 경영진까지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 '회사'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에 대한 '회사관계자' 적용범위 >

가중 사유	적용대상	감경 사유	적용대상
과실 조치 후 3년 이내/고의·중과실 조치 후 5년 이내 고의·중과실 위반	관련자	회사가 자산·매출 1천억 미만	모두
위반기간 3년 초과(고의 위반)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관련자
허위자료 제출 및 자료제출 거부		이해관계자 피해 충분히 보상 심사·감리 착수 전 수정공시	모두
내부회계 중요 취약사항 발견	대표, 감사 등	감리 후 1개월 이내 수정공시	
위법행위 중요도 상	관련자	3년 이내 밸류업 우수표창	관련자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징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참작 위반자의 부담능력, 취득이익 고려	

[ 과거 사례 : 새로운 경영진의 회계 정상화 노력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

◆ A社<sup>코스닥</sup>는 회계부정 발생 이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었으며, 새 경영진이 외부전문가 조사 및 재감사를 수행하여 회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회사의 과징금 20% 감경

○ 다만,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 정정 공시를 위한 노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前대표이사의 과징금도 함께 감경되는 문제 발생

		과징금	
		감경 前	감경 後
회사	 A社	75억원	60억원
회사 관계자	 前대표이사	· 기본과징금 : 20억원 · 한도 : 7.5억원 · 최종 : 7.5억원	· 기본과징금 : 20억원 · 한도 : 6억원 · 최종 : 6억원

② (부과한도) 개인 과징금 부과한도가 낮아 회사관계자별 책임이 다름에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조치 실효성·형평성 저하

- 약 70% 이상이 과징금 부과한도 적용을 받음에 따라 개인별 책임수준에 맞는 과징금 차등화가 사실상 불가능

\* '22~'24년 처리건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회사관계자 전체 54명 중 37명

[ 과거 사례 : 위반행위 가담정도가 다름에도 동일한 과징금 부과 사례 ]

◆ (주)D<sup>비상장</sup>은 고의로 가공의 매출을 계상하였고, 업무집행지시자(최대주주) A 및 담당임원 B가 이 회계처리위반을 주도

○ 업무집행지시자 A 및 담당임원 B가 회계부정 사실을 은폐하고 회계정보 접근을 차단함에 따라, 前대표이사 C는 회계부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과징금 부과한도로 인해 **A, B, C 모두 동일 과징금 부과**

	기본 과징금	한도	최종 과징금
 업무집행지시자 A 1.6억원	1.6억원	0.2억원	0.2억원
 前대표이사 C 1억원	1억원		
 담당임원 B 9,900만원	9,900만원		

□ (개선방안)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하여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도 및 적용기준 개선

① 정정공시(20~30%) 피해보상(50%)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前 경영진에게는 적용 제외

② 고의 분식에 대한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 과징금의 10% → 20%로 2배 상향하여 책임에 비례한 과징금 차등부과

※ 종과실 회계분식에 대한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부과한도는 10%로 유지

⇒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사건 시뮬레이션 결과, 고의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44% 증액** 효과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35① 및 외감규정 [별표8] 개정 필요

#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 개선

1

## 내부감사, 외부감사,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 근절

- (현황 및 문제점)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①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 ②외부감사인, ③당국 회계심사·감리 제도 운영중

① 회사(내부)	② 감사인(외부)	③ 감독당국
<b>내부감사기능(감사위원회, 감사)</b> ✓ 주주를 대신하여 회계부정 감시 ✓ 회계처리 적정성 검증 ✓ 회계 오류나 부정 확인 즉시 조사 조치	<b>'독립적'인 검증 기능</b> ✓ 재무제표 적정성 검증 ✓ 내부회계감리제도 감사 ✓ 지배기구 및 감독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b>제도, 절차, 제재 원칙 수립</b> ✓ 회계기준, 감사기준 제정 ✓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통한 회계부정 제재조치 ✓ 감사인 감사품질 감독 등

- 그러나, 회계감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외부감사,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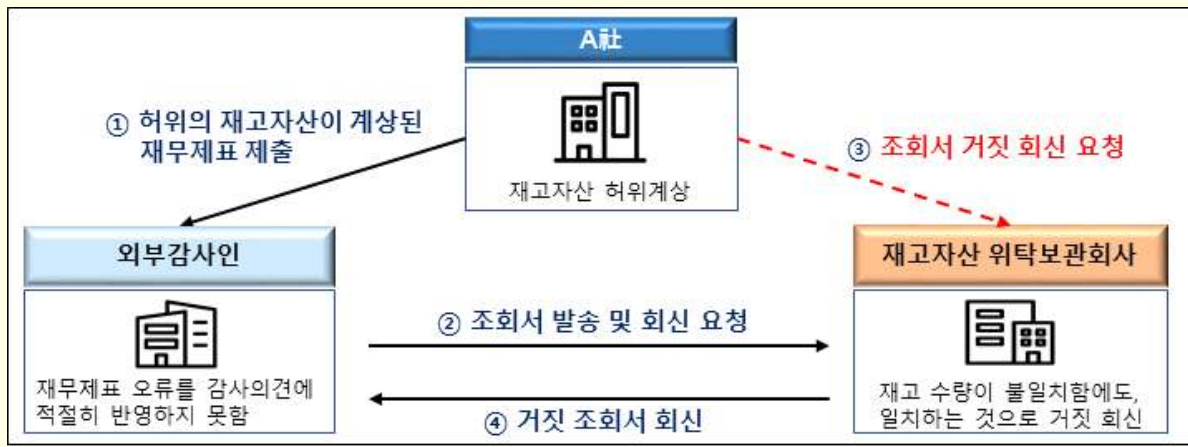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외부감사 방해 : ('19년~'23년) 연평균 2.6건 → ('24년이후) 6건  
 최근 5년간 회계감리 방해 : ('19년~'23년) 연평균 0건 → ('24년이후) 4건

### [ 과거 사례 : 외부감사 방해 ]

◆ A社<sup>코스닥</sup>는 감사인이 재고 보관업체에 '타처보관조회서\*'를 발송할 경우,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보관업체에게 거짓 회신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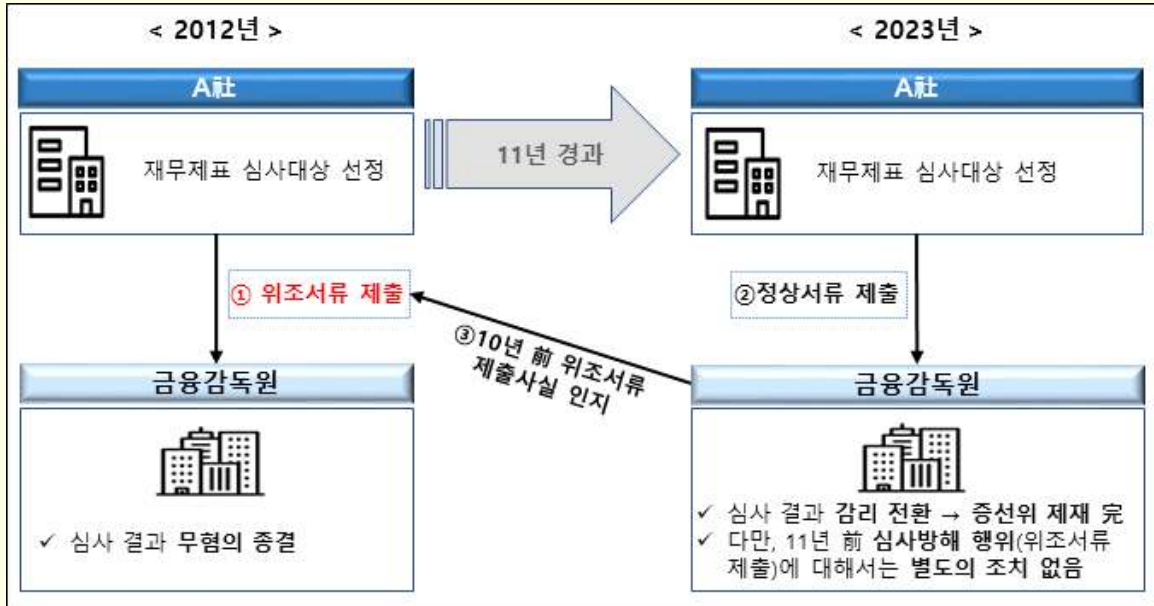
\* 타처(他處)보관 재고 조회 :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을 외부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 해당 외부기관에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감사절차

- 원재료 보관 업체는 A社<sup>코스닥</sup>의 요청에 따라 감사인에게 거짓 회신함



[ 과거 사례 : 재무제표 심사 방해 ]

- ◆ A社<sup>코스피</sup>는 '12년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당시, 회계기준 위반이 있었음에도 위조계약서의 제출을 통해 지적을 회피
- ◆ 이후, '23년 회계오류 수정공시로 인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과정에서 금감원은 A社<sup>코스피</sup>의 '12년 위조계약서 제출사실을 인지하였으나,
  - 회계오류에 대해 증선위 조치('24년)를 받았을 뿐 '12년도의 **심사방해 행위(위조서류 제출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제재 조치 미부과**



□ (개선방안) 내부감사의 회계감시 방해, 외부감사 방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방해 발생시, 동일하게 고의(2단계)\*로 강력 제재

※ 고의 2단계 제재조치 :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회사 및 임직원 검찰고발 등

- (감사기능 방해) 정당한 이유없는 감사위원 등의 자료요구 및 회계오류 정정 요구 불응 또는 자료 위·변조 등
- (외부감사 방해) 외부감사인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및 자료 위변조, 재고실사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 (심사·감리 방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거부, 재고자산 은폐 등

☞ (필요조치) 외감규정 [별표7] 및 시행세칙 [별표1] 개정 필요

2

다수의 과실 오류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다수의 재무제표 위반사항 발생시 계정과목별 위반금액이 '중요도\*'의 4배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과실로 조치\*\*

\* 매출과 총자산의 평균의 1%    \*\* '24년 심사착수 153건 중 경조치종결 25건(16.3%)

- 이에 따라, 재무제표 오류금액이 커서 투자자 혼란·피해가 상당함에도 경조치만 받아 제재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흠결로 인한 재무제표 오류공시 재발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 제기

[ 과거사례 : 다수의 재무제표 오류 발생 ]

- ◆ A社와 B社는 재무제표 오류·정정 규모가 유사하여, 투자자, 금융회사 등 정보 이용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유사하나, 제재수준은 큰 차이
- ◆ A社는 경조치만 부과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회계전문성 확보를 위한 투자 등에 소홀할 가능성

지적사항	A社		B社	
	중요도	위법동기	중요도	위법동기
A.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3.5	과실	9.0	중과실
B.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 과소계상	3.5	과실	1.0	과실
C.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기재 누락	3.5	과실	0.5	과실
<b>위반 중요도 단순합산</b>	<b>10.5</b>	-	<b>10.5</b>	-
최종 조치수준	과실 II단계(10.5배)		중과실 II단계(9배)	
조치 내용	경고		과징금, 감사인지정	

- (개선방안) 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의 근본적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 신설

-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고 위반금액 합산시 중요도의 8배 초과시에는 ▲감사인 지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부과(1~3년)

< '24년 심사처리건 중요도 분포(25건, 평균 6) >

지적 건수 \ 합산시 중요도	4 미만	4 이상 8 미만	8 초과 16 미만	16 이상
1~2	7	12	2	1
3	-	-	2	1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는 있으나 감사를 받지 않고 검토만 받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 및 ▲5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등에만 적용

👉 (필요조치) 외감규정 [별표7] 및 시행세칙 [별표1] 개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회사가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회계부정을 예방할 제재 인센티브 미흡

○ 내부감사기구는 법령상 의무\*가 있고, 회사도 이를 지원해야 하지만, 추가 인센티브가 없으면 감사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회계부정 가능성을 통보해야 하며,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법무법인 등 제3자를 통해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증선위 보고 및 감사인 제출

**[ 과거 사례 : 내부감사기구 ]**

◆ A社 상근감사 甲은 내부 신고에 따라 회계부정 가능성을 인지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조사 실시후, 대표이사에 재무제표 수정 적극 요구

◆ A社は 회계감리를 거쳐 과징금 등 제재처분 과정에서 자진수정에 따른 과징금 10% 감경을 받았으나, 상근감사 甲은 이후 계약 미연장으로 교체


□ **(개선방안)** 내부감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

○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 제재감면을 위한 구체적 행위·절차 기준\* 마련(연구용역 진행중)

\* (예) 회계·감사부서와 내부감사기구 소통, 내부감사기구 또는 외부 회계법인 자문을 통한 회계처리 방법 결정, 내부고발자 보호, 특수관계자 등 제3자 거래 통제 등

○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위반 방지 노력에 비례하여 회사 또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제재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예)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적극적인 회계부정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운영한 경우 감경 적용

 **(필요조치) 시행세칙 [별표1(조치양정기준)] 개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대주주나 경영진이 변경된 이후, 이전에 발생한 회계부정을 적극 조사하여 신속히 수정할 유인 미흡

\* 현재는 감리착수 전 자진 정정공시한 경우 과징금 30% 감경만 가능

- 새로운 대주주·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자진 수정하더라도 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소극적 대응 가능성
-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경영진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 회계부정을 자진 정정할 유인 감소

**[ 해외 사례 : 경영진 교체후 노력에 따른 제재감면 ]**

- ◆ 미국 Cloopen社は '21년 중 해외자회사에서 발생한 매출 과대계상 분식혐의를 '22.4월 결산 중 외부감사인이 발견 후 이사회 보고
- ◆ 이사회는 즉시 경영진 교체, 가담자 해고 및 내부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22.5월 SEC에 자진신고 및 조사 적극 협조,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조치 완료
- ◆ '24.2월 SEC는 민사 과징금 및 벌금 면제 조치 발표

- **(개선방안)**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관련 없는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 및 정정하는 경우, 과징금 감면 등 제재 인센티브 확대

- 교체된 경영진이 내부감사기구 등을 통해 지체없이 회계부정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 책임있는 임원 교체, 정정공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당국 보고·협의,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 감면(최대 면제)

\* 형식적으로 대주주·경영진이 교체되는 등 악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

- ※ 회사의 재기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증권위 논의과정에서 과징금 면제, 과징금의 증권발행제한 대체 등 적극 고려

☞ **(필요조치) 외감규정 [별표7] 및 시행세칙 [별표1] 개정 필요**

## IV. 향후 계획

-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 추진
  - 현재 실시중인 연구용역 결과, 전문가·회계업계·기업계 간담회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구체적 법규 개정안 마련
  - 법개정사항은 연내 국회제출(의원입법 추진)
  -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 실시

세부 과제	소관법규
<b>1. 증대한 회계부정 일벌백계하여 시장질서 확립</b>	
① 고의적 분식회계 과징금 금액 상향	외감규정
②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근거 마련	외감법 시행령 외감규정
③ 회계부정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외감법 시행령 외감규정
④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외감법
<b>2. 회사의 회계투명성 확보 인센티브 개선</b>	
① 내부감사, 외부감사, 회계심사 방해에 대한 제재 강화	외감규정
② 다수의 위반사항 발생시 조치 실효성 제고	외감규정
③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따른 제재감경(중기)	외감규정
- 내부감사기구 회계감시 행위기준 마련	
- 행위기준별 제재감면 기준 마련	
④ 회계부정 신속 조사·정정시 회사 과징금 감면	외감규정